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A형) 1교시

[문항 1] **가**의 ㉠을 적용하여 **나**의 시를 해설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의 논지를 비판해 보시오. (700 ± 50자)

가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고등학교 국어』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고등학교 문학』

다

동산에 이름 없는 꽃들이 많다.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줄 수밖에 없다. 이름이 없는 꽃이라면 내 스스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으나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물에 대해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는 이름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 비유하건대 음식에 있어 어찌 그 음식의 이름을 사랑하며, 옷가지에 있어 어찌 그 옷가지의 이름을 사랑하겠는가. 맛 좋은 생선구이가 있다면 배불리 먹을 뿐이며, 가벼운 털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어 몸을 다습게 할 뿐이다. 무슨 고기인지, 또는 무슨 짐승의 털인지, 그 이름을 모르면 어떡하랴.

내가 본 꽃에 이미 사랑을 느꼈다면 그 꽃의 이름을 모르면 어떡하랴. 그 꽃에 대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 아예 이름을 지을 것조차 없겠으나, 그 꽃에서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이 있어 이미 그 사랑을 내가 느꼈다면 구태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름이란 피아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피아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푸르고 누런 것, 붉고 흰 것,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등등 이름 아닌 것이 없다. 이것, 저것도 이름이며, 무명(無名)을 무명이라고 한 것도 모두 이름일 것이다. 부질없이 이름을 지어 꾸밈 필요 없이 않은가.

신경준, <이름 없는 꽃>, 『고등학교 국어』

[문항 2] **가**와 같은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나**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가**의 현상이 용인될 수 있었던 까닭을 **다**를 통해 논술하십시오. (700 ± 50자)

가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식당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노키즈(no kids)존’이 늘어나고 있다. 일정 나이 이하의 아이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카페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40)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물품을 파손하거나 시끄럽게 해 다른 손님이 항의하는 일이 많았는데 아이 부모도 손님이라 주의를 주기 어려웠다.”라며 “노키즈존으로 바꾸면 손님이 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조용한 곳으로 소문나 손님이 늘었다.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비슷하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 이른바 ‘노틴에이저존’을 선언한 카페도 있다. 이 카페는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 매장에 방문해 흡연, 바닥에 침 뱉기 등의 행동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아 매장 방문을 거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아이를 둔 부모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보>, 2017년 8월 1일

나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자신이 자주 지나다닌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고 이것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건물의 주인이 건물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머지 유리창을 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무법 상태에서 모든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그 건물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

다

근대 민법은 자본주의의 정착과 함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특히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개인 간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한하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사적 자치 원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나 도박에 의한 채무 부담 등과 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